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자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35
----------	------

발의연월일 : 2019. 10. 10.

발의의원 : 구자학 의원, 서도원 의원,
신동윤 의원

1. 제안이유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농업, 농업인, 협약금융기관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제2조)
- 나.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심의,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3조~제6조)
- 다.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를 정함(안 제7조)
- 라. 협약금융기관 및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의무를 명시(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2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 신청) 제3조 요건을 갖추어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농산물 재배면적(m²),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5조(지원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달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농산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한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신청 농가와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약금융기관과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서

○ 농업인 현황

농 가 현 황			연 락 처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집	핸드폰

○ 신청내역

재배면적 (㎡)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품종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수량 (kg, 포대, box, 망)	월급제 희망량	
			기간 (개월)	금액(천원)
			○월 ~ ○○월 (○○개월)	

위와 같이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붙임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사본) 1부.

2020.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달 성 군 수 귀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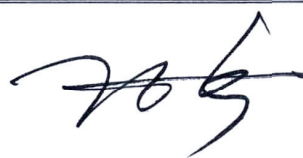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발 의 자 서 명 부

의 원 명	서 명	날 인
구 자 학	구 자 학	
서 도 원	서 도 원	
신 동 윤	신 동 윤	